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26 발의연월일: 2020. 8. 31.

발 의 자: 장철민·안호영·송갑석

윤미향 · 김민철 · 김윤덕

최종윤 · 황운하 · 조승래

임오경 · 송옥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생활균형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휴교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녀의 가정 돌봄을 위한 휴가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돌봄 공백 장기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보육 및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 휴업과 아동·장애인 자가격리 등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발생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최장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22조의2제5항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발생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 1.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이 휴업, 휴교 또는 휴원하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 2. 근로자의 가족이 이용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 료복지시설 및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업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경우

3. 근로자와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 중 만 13세 이하의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라 자가(自家)치료를 하거나 제42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 ③ (생 등을 위한 지원) ① ~ ③ (현 행과 같음) 략)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 **4**) -----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으로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 고용노 동부장관은 재난발생지역에 거 주하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가 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1.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초등학교, 「유아 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 이집(이하 "학교등"이라 한 다)이 휴업, 휴교 또는 휴원 하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 2. 근로자의 가족이 이용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
 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제38
 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업
 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경우
- 3. 근로자와 거주를 같이하는가족 중 만 13세 이하의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감염병의에 바로 장애인이 「감염병의에 바로 사가(自家)치료를 하거나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u>⑥</u> ~ <u>⑩</u>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⑤ ~ ⑨ (생 략)